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외 도서관 내 한국자료실 설치·지원 시책 수립〉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57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해외 도서관 내 한국자료실 설치·지원 시책 수립(안 제53조제1항·제2항)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태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4. 10.
3. 회 부 일 : 2026. 4.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자료실 설치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국가의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서관자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도서관 시설 보급을 넘어 실제 운영에 필수적인 한국자료실의 설치, 도서 및 디지털 자료의 제공, 전문 사서 인력의 파견·교류 등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 도서관 보급과 한국자료실 설치·운영, 관련 도서관자료 및 인력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증진하고 해외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III. 검토의견

1. 해외 도서관 내 한국자료실 설치·지원 시책 수립(안 제53조제1항·제2항)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개발협력 및 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 및 해외 도서관 내 한국자료실 설치·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도서관의 해외 보급 등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협조 요청 받은 자는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임(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53조(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3조(도서관 등의 해외 보급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개발협력 및 한국문화의 확산----- -----보급 및 해외 도서관 내 한국자료실 설치·운영 지원, 관련 도서관자료 및 인력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 제53조¹⁾는 국가가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보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 및 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을 조성하여 해당 국가 문화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사업²⁾을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음.

현행법 제20조³⁾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로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1) 「도서관법」

제53조(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2026년 몽골 울란바토르 시립도서관 조성 중(예산 12억 1,800만원)

참고1.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사업 현황 참조.

3) 「도서관법」

제20조(업무)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書誌)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해외 한국학 연구 기반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해외 한국학자료실 설치, 해외한국학 사서 워크숍 등의 사업⁴⁾을 실시하고 있음.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해외 한국학자료실 설치 사업⁵⁾은 재외공관의 협조를 통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선정된 해외 주요 도서관에, 서가, 컴퓨터, 열람용 책상과 의자 등 한국학자료실 설치비용과 자료를 제공하고, 재외공관과 연계하여 문화행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⁶⁾

최근 한류의 확산과 함께 한국 문화콘텐츠를 이용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한국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한류 경험자 절반 이상이 동의⁷⁾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4) 2026년 예산 3억 1,400만원(해외 주요도서관 한국자료실 설치 2억 200만원, 해외 한국학사서 워크숍 및 문화동반자 사업 1억 1,200만원)

5) 2007년부터 30개국 37개관을 지원하였고, 2026년 현재 24개국의 28개관 지원하고 있음.
참고2. 해외 한국자료실 설치 사업 현황 참조.

6) 국립중앙도서관은 설치 기관에서 희망할 때 한국어 자료 정리 및 업무 연락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원봉사단원이 참여하도록 지원(2009년 이집트 국립도서관)한 사례는 있으나, 국립중앙도서관 예산 지원을 통한 사서 인력을 파견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함.

7) ‘한국어를 학습해야 한다’는 응답은 50.7%로 ‘보통’(28.1%)과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21.2%)를 크게 상회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6 해외한류 실태조사」, 2026, p.96.

2020년 기준 전 세계 한국어학, 한국학 전공 개설 대학은 106개국 1,404개교에 달하며⁸⁾, 2025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⁹⁾는 434,897명으로 해외 한국학자료실 설치 사업이 최초로 시행된 2007년의 72,292명 대비 6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

이렇게 한국문화와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국가의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해외 도서관 한국자료실에 대한 자료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한국학자료실 설치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해외 한국학자료실 설치 사업 예산 현황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금액	3억 6,000만원	3억 300만원	3억 3,200만원	2억 4,900만원	1억 9,800만원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8) 출처 : 한국국제교류재단

9) TOPIK PBT, IBT, 말하기 시험 응시자 합계, 출처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10)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한국자료실 지원 개선방안 연구”. 2020, p.227.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외 도서관 내 한국자료실 설치·운영, 도서관 자료 및 인력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안정적인 해외 한국학자료실 설치 사업의 운영과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이를 통하여 한국어 학습 활성화와 한국학의 발전,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과 정치, 경제,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 제53조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과 해외 도서관 내 한국자료실 설치·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데,

해외 도서관 내 한국자료실 설치·운영 지원은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과는 달리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¹¹⁾에 포함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시행기관이 제출하는 시행계획안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주관기관인 재정경제부와 외교부가 종합 검토한 후 제출한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심사·의결하여 확정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관기관”이란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8.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심사·의결하여 확정한다.

② 시행기관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이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국제개발협력을 종합적·체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이 포함된 시행계획안(이하 “분야별 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한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제5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 의결 후 변경된 사정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법에 시행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이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별도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경우, 현재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절차와 중복되고 주관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심사 및 조정권¹³⁾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그러므로, 개정안에 의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해외 도서관 내 한국자료실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과는 무관하도록 별도의 항 또는 호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한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은 「도서관법」에 따른 국가 간 상호 문화 교류를 “국제문화교류”의 한 분야로 규정¹⁴⁾하고 있고,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및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의 수립
2. 분야별 기본계획안과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위원회 제출
3.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및 조정
4. 위원회가 위임하는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평가
5.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6.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를 위한 점검 및 지원
7. 소관 분야의 종합기본계획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의 홍보
8.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

14)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1.~ 16. (생략)

17, 「도서관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¹⁵⁾

따라서, 해외 도서관 내 한국자료실 설치 지원 사업은 국제문화교류의 한 부분으로 해당 계획 수립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시책이 시행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일정 부분 확보되고 있음.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도서관법」에 해외 도서관내 한국자료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과 입법 실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18.~ 22. (생략)

15)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5.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6.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7.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방안
9.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도서관의 해외 보급과 해외 한국자료실 설치·운영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의 시책 마련이나 자료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상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별 특성과 수행 주체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단일 조항에 병기된 사업을 각 호로 구분하여 사업 범위와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

□ 사업 개요

- (목적) 교육·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환경개선과 문화·교육콘텐츠 지원을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 및 교육·문화 불평등 해소
- (사업대상) ODA 중점협력국(교육 중점 협력분야)
- (지원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도서관법 제 53조(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 (사업기간) '07년 ~ 단년도 계속
- (추진방식) 민간보조(공모), 직접수행
- (사업내용) △공공도서관 환경 개선(리모델링, 신축), △콘텐츠 및 기자재 지원, △현지사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 경과

- ('07~'19년)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13개국 132개관
- ('20년) 수혜자 확대(어린이·청소년→국민)를 위해 사업대상 변경*(작은→공공도서관),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 1개국 1개관
- ('21~'22년) 베트남 하노이시립도서관 조성 완료 * '23. 4. 개관식
- ('23~'26년) 몽골 울란바토르시립중앙도서관 조성 중

□ 조성 실적 : 13개국 134개관, 16,408백만원

연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도서관 (개관)	2	5	8	2	15	13	13	19	15	10
예산 (백만원)	30	150	300	70	500	861	860	930	900	720
연도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도서관 (개관)	10	11	9	1개관			1개관			
예산 (백만원)	550	630	560	539	594	1,796	825	2,279	2,051	1,263

연도	국가명	조성개수 (개관)	소요예산 (백만원)	비고
2007	가나(2)	2	30	복권기금
2008	모잠비크(5)	5	150	문예기금
2009	가나(4), 탄자니아(4)	8	300	관광기금
2010	가나(2)	2	70	관광기금
2011	가나(4), 나미비아(1), 남아공(4), 에티오피아(5), 탄자니아(1)	15	500	일반회계
2012	가나(5), 몽골(3), 에티오피아(2), 탄자니아(3)	13	861	일반회계
2013	가나(3), 에티오피아(3), 잠비아(3), 케냐(1), 탄자니아(3)	13	860	일반회계
2014	가나(5), 르완다(3), 몰도바(2), 에티오피아(4), 캄보디아(5)	19	930	일반회계
2015	가나(3), 르완다(3), 에티오피아(6), 캄보디아(3)	15	900	일반회계
2016	가나(3), 몽골(3), 베트남(4)	10	720	일반회계
2017	몽골(3), 베트남(4), 탄자니아(3)	10	550	일반회계

연도	국가명	조성개수 (개관)	소요예산 (백만원)	비고
2018	몽골(4), 베트남(3), 탄자니아(4)	11	630	일반회계
2019	몽골(3), 베트남(3), 탄자니아(3)	9	560	일반회계
2020	베트남(1) *사업대상 변경(작은→공공) * 하노이시립도서관 4층 어린이실	1	539	일반회계
2021	베트남(1) * 하노이시립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		594	일반회계
2022	베트남(1) * 하노이시립도서관 2~3층 열람실 자료실 / '23년 12월 완료		1,796	일반회계
2023~ 2026	몽골(1) * 울란바토르 시립중앙도서관	1	6,418	
합 계(작은 132개관, 공공 2개관)		134개관 (13개국)	16,408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해외 주요 도서관에 한국자료실 설치 및 한국 관련 자료 제공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한국문화 활성화 기반조성
- **(사업기간)** 2007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수행기관)** 국립중앙도서관
- **(지원대상)** 해외 국립·공공·대학도서관
- **(지원내용)** 한국자료실 설치 및 자료제공, 문화행사 개최, 노후설비 교체비 지원 등
 - ※ **(유사 사업과 차별점)** ▲ 한국 자료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서관 중심 지원,
 - ▲ 기설치 한국자료실 후속 지원과 모니터링을 위해 매년 운영 실태 전수조사 실시
 - ▲ 한국문화 활성화를 위한 재외문화원·재외공관 등 연계 문화행사 개최 지원
- **(예산/방법)** 197.9백만원 / 직접 수행, 일반용역(재외공관 협조)
- **(지원실적)** 30개국 38개관 설치, 24개국 28개관 운영(운영종료 9개관)
- **(추진일정)** 계획수립(1월), 문화행사 지원 공모(2~3월)·선정(4월), 도서 신청·구입(4~6월)·발송(7~9월), 운영실태조사(9~10월), 차년도 신규 설치기관 공모(9월)·선정(12월)

□ '26년 추진현황

- **(신규 자료실 설치)** 서가, 컴퓨터, 열람용 책상 등 설치비 약 30백만원 (USD 20,000) 지원(1개관, 총 44백만원, 개관행사 참석비 포함)
 - ※ 5년 간 신규 자료실 설치 희망 기관 65개관('24년 14개관, '25년 7개관, '26년 11개관)
- **(한국자료 제공)** 한국 역사·문화·사회·경제·한국어 관련 자료 등 신규 자료실 1,800책(70백만원), 기설치 28개관 1,400책(54백만원)(총 124백만원)
 - ※ 도서 구입비, 발송비 포함 1책당 약 3.9만원 책정
- **(문화행사 개최)** 한국자료실·재외공관 연계 문화행사 운영비 1관당 3백만원 지원(6개관, 총 18백만원)
- **(노후설비 교체)** 개관 5년 경과 또는 지원 연장 기간 만료 도래 기관 4개관, 1관당 3백만원 지원(총 12백만원)

< 최근 5년간 해외 한국자료실 예산 현황 >

연도		'22	'23	'24	'25	'26
예산		360백만원	303백만원	332백만원	249백만원	197.9백만원
지원 내역	자료 제공	24개관 10,600책 (1관당 442책)	25개관 6,800책 (1관당 272책)	26개관 7,000책 (1관당 269책)	28개관 7,400책 (1관당 264책)	29개관 3,200책 (1관당 110책)
	문화 행사	7개관	7개관	6개관	6개관	6개관
	노후 설비 교체	5개관	4개관	1개관	4개관	4개관

□ **조성 실적 : [설치] 30개국 37개관 / [운영] 24개국 28개관 / ['26년
설치 예정] 1개관**

번호	국 가	기관명	선정	설치	지원기간
1	베트남	국립도서관(하노이)	'07	'07.11.	2021~2026
2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도서관	'07	'07.12.	2025~2030
3	미국	뉴욕 플러싱퀸즈도서관	'07	'07.12.	2020~2025
4	러시아	국립도서관(RSL) 동양센터	'08	'09.07.	2021~2026
5	폴란드	돌노쉬롱스키주립도서관	'09	'09.12.	2025~2029
6	튀르키예	국립도서관	'10	'11.01.	2022~2027
7	스페인	말라가대학 도서관	'11	'11.12.	2022~2027
8	벨기에	루벤카톨릭대학 도서관		'11.12.	2022~2027
9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도서관(다문화지역학부)		'12.04.	2022~2027
10	필리핀	아테네오대학 도서관	'12	'12.08.	2023~2028
11	멕시코	콜맥스대학 도서관		'12.12.	2025~2030
12	영국	옥스퍼드대학 도서관		'13.06.	2023~2028
13	베트남	호치민국립대 인문사회과학대학 도서관	'13	'14.02.	2024~2029
14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	'14	'14.12.	2025~2030
15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대학 도서관	'15	'15.09.	2021~2026
16	중국	북경대학 도서관		'15.11.	2015~2026
17	미얀마	양곤외국어대학 도서관	'16	'16.09.	2022~2027
18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인문사회과학도서관	'17	'18.05.	2023~2028
19	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차대학 동양학부도서관	'18	'18.10.	2023~2028
20	러시아	국립도서관	'19	'19.11.	2020~2025
21	헝가리	ELTE대학교	'19	'20.10.	2025~2030

번호	국 가	기관명	선정	설치	지원기간
22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	'20	'20.10.	2025~2030
23	방글라데시	IUB대학도서관	'22	'22.10.	2022~2027
24	영국	세필드대학 도서관	'21	'23.08.	2023~2028
25	칠레	칠레센트럴대학 도서관	'23	'24.01.	2024~2029
26	몽골	국립대학교	'24	'24.06.	2024~2029
27	대만	중국문화대학교	'24	'24.12.	2024~2029
28	스페인	살라만카대학교	'25	'25.12.	2025~2030
29	불가리아	부르가스지역도서관	'26	예정	